



## 약국개설 등록

민원사무명	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
사무내용	약국을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
수수료	5,000원
처리기한	3일
구비서류	※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≡ 민원인 제출서류 1. 신청서 1부. 2.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1부.  ≡ 변경사항 1. 약국의 명칭, 2. 약국의 소재지, 3. 약국의 영업면적 등
처리절차	접수 → 검토(소재지 변경시 시설조사) → 결재 → 결과 통보
협의기관 및 협의사항	협의사항 없음
관련법·제도	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
서식	<a href="#">파일다운받기</a> 